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0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박해철 · 민병덕 · 이용선
박희승 · 박균택 · 한민수
박지원 · 박홍근 · 임호선
최민희 · 이학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u>인증</u> 한 공원을 말한다.	4의4. ----- ----- ----- ----- ----- ----- <u>지정</u> -----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지질공원의 <u>인증</u> ·운영	제4장의2 지질공원의 <u>지정</u> ·운영
제36조의3(지질공원의 <u>인증</u>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u>지정</u>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u>인증</u> 을 신청할 수 있다.	① ----- ----- ----- ----- ----- ----- <u>지정</u> -----.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u>인증</u> 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② ----- ----- <u>지정</u> -----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

-----지정-----.

1. ~ 4. (현행과 같음)

③ -----지정-----

④ -----

-----지정-----

-지정-----

⑤ -----

지정-----.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

-----지정-----

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u>인증기준</u>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u>인증</u>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u>인증기준</u>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 ----- <u>지정기준</u>----- ----- ----- -----.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지정기준</u>----- -----
--	--